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11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윤준호 · 이양수 · 오영훈

박주현 · 김성찬 · 경대수

황주홍 · 손혜원 · 박완주

김태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협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 제1항 제4호 등).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착수기한”을 “시작 기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를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착수기한”을 “시작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착수 기한까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를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로, “착수기한”을 “시작 기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혜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1. ~ 28. (생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u>착수·변경</u> 또는 완료의 신고	29. ----- ----- ----- ----- ----- ----- ----- <u>시작</u> -----
30. ~ 33. (생략)	30. ~ 3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개발사업의 <u>착수</u> ) ①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u>개발사업에 착수하여야</u>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u>착수기한</u> 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착수기한까지</u>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u>착수기한</u> 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	제30조(개발사업의 <u>시작</u> ) ① ----- ----- ----- ----- ----- ----- ----- <u>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u> -----. ----- <u>시작 기한</u> ----- ----- ----- ----- ----- -----. ② ----- <u>시작 기한까지</u> ----- <u>개발사업을 시작하지</u> ----- <u>시작 기한</u> ----- -----

는다.

----